

#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서윤기 의원 외 42명
- 나. 의안번호: 제1655호
- 다. 발의일자: 2020. 7. 13.
- 라. 회부일자: 2020. 7. 14.

### 2. 제 안 사 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(안 제10조제2항).

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,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#### 〈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〉

연번	인권영향평가 항목	개정 권고 조항	권고사유
6	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	20	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

- 이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구제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.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가 부과·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다만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면 관련 용어를 “이의신청”이 아니라 “이의제기”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임.

- 한편, 서울시는 현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대기온도별로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음.

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693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고, 이 중 이의신청은 2018년과 2019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, 2020년에는 7건이 접수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음.

〈공회전 허용 시간〉

구분	0℃ 이하	0~5℃	5~25℃	25~30℃	30℃ 이상
허용시간	공회전허용	5분	2분	5분	공회전 허용

〈과태료 부과건수 및 이의신청 현황〉

과태료명	구분	2018	2019	2020.6	비고
대기환경보전 법 위반 과태료	과태료(건)	214	222	257	
	이의신청(건)	-	-	7	